

영등포구의회
제150회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09. 12. 3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9. 11. 17.
-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■ 개정(제안) 이유

-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음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

■ 주요골자

-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(안 제16조의2)

■ 관련법규

-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3조 · 제15조

■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

- 강남구, 창원시, 여주시, 이천시, 대전광역시

■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보면,
-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, 구민 1인당 보험료는 약 420원이며, 총 보험료는 176,400천원으로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, 보장내용은 보험약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,
- 부칙에 자전거 보험가입 조항의 신설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9. 12. 3.

보 고 자 : 이 남 식

【참고자료 : 관련 법령】

관 련 법 령

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[법률 제8852호, 2008. 2. 29, 타법개정]

제4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(일부개정 2009. 9.29)

제3조(서울특별시 등 시장 등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자전거 이용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,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(개정 2009.04.22)

③ 자치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와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·보관, 자전거등록업무,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(개정 2009.04.22)

제15조(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.(개정 2009.04.22)